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9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이재관·정진욱·장철민
박용갑·김남근·이훈기
이주희·박희승·안도걸
송재봉·장종태·박지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

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65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핵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서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4.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가 추천

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3조제1항제2호 중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를 “핵심전략기술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중핵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중핵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핵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화선도기업,”을 “특화선도기업, 중핵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를 “제13조, 제13조의2”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상 선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제3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2. 제2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학과·학부 및 학칙으로 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을 “특화단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지정에”를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 등에”로 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3년 또는 5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를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의2. 제4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핵기업을 추가·삭제하는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
2. 특화단지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특화단지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또는 5년 단위의 특화단지 발전계획(이하 “특화단지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발전목표

2. 특화단지의 현황과 여건 분석

3.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화단지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특화단지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특화단지발전계획 및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화단지발전계획, 전년도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특화단지발전계획 및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중핵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 12. (생 략) <u><신 설></u>	5. ~ 12. (현행과 같음) 1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서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11의3. (생략)

<신설>

12.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④ ~ ⑦ (생략)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

강화위원회) ① -----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

부 공동 소속-----

·

1. ~ 11의3. (현행과 같음)

11의4. 제45조 및 제46조에 따

른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

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1. (생략)

2.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
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
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
황

3.·4.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

-----.

1. (현행과 같음)

2. 핵심전략기술과-----

3.·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중핵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
기간을 정하여 중핵기업 선정
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핵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13조 및 제15조의 선정서 또는 제14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로 정한다.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특화선도기업, 중핵기업,-----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

-----제13조, 제13조의2-----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활용) ① -----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
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
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
·장비기업에게 개방·활용하
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
른 공기업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생
략)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
이 해당시설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신설>

-----.

1. -----
-----제5조제4항제1호-----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현
행과 같음)

② -----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소재·부품·장비 수
요창출 우선 지원대상 선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을 제38조에 따른 소재·부품
·장비 수요창출 우선 지원대

· 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특
화단지를-----.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3년 또는 5년 단위로

<신 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신 설>

2. 3. (생 략)

4.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 등에-----
-----.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의2. 제4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3. (현행과 같음)

4. -----시·도시사가-----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
우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경
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을 하는 경우 또는 제1
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
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핵기업을 추가·삭제하는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
2. 특화단지로 지정된 면적의 1
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의 승인 결과를 반영하는 경
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
는 경우

<u><신 설></u>	<u>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7조의2(특화단지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또는 5년 단위의 특화단지 발전계획(이하 “특화단지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u>② 특화단지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특화단지의 발전목표</u> <u>2. 특화단지의 현황과 여건 분석</u> <u>3.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특화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시·도지사는 특화단지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특</u>

화단지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
(이하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특화단지발전
계획 및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
을 수립한 경우 특화단지발전
계획, 전년도 특화단지발전시행
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을 산업
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특화단지발전
계획 및 특화단지발전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